

##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(제33조제2항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.
- 나.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.
- 다.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.
- 라.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.
- 마.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.

### 2. 개별기준

|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한기간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회 해당 | 2회 이상 해당 |
| 가.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1)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| 4개월   | 8개월      |
| 2)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| 2개월   | 4개월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3)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| 1개월 | 2개월  |
| 4)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2개월 | 4개월  |
| 5)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| 2개월  |
| 나.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| 2개월  |
| 다.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| 12개월 |
| 라.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
| 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"사망재해자"라 한다)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| 2개월 | 4개월  |
| 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| 1개월 | 2개월  |
| 3) 사망만인율(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)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 | 1개월 | 2개월  |
| 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개월 | 8개월  |